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구성에 관한 조례안

(권순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76
----------	------

발의연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권순선 의원 (1명)

찬 성 자 : 임종국, 이석주, 이성배,
김제리, 김경영, 권영희,
문장길, 오현정, 홍성룡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유해물질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구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교육감은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기구 조성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
4.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

설 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용역사업¹⁾으로 기 추진하였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실태조사 비용(제5조)
- 유해물질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한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제7조)
- 협력체계 구축비용(제8조)

나. 전제

-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가 유해성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토양오염 검사비용을 전적 받아 제출 한 ‘한 개 기관 당 토양오염 검사비용 75만원’을 준용하였고 서울시 유·초·중·고 2,173개 기관(유830개원, 초607개교, 중386개교, 고320개교, 특수30개교, 2019년 상반기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 기준)을 대상으로 추계기간 5년 동안 균등(1차년도~4차년 435개교, 5차년도 433개교)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제하여 비용추계
 - 토양오염 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카드뮴, 구리 등 22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함(붙임 참조)
-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한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최근3년 간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액 평균(11개교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1) 용역사업명: 학교운동장개선설계지침및시설기준개발학술연구, 기간: 2013.11.26.~ 2015.4.30. 사업비: 85,621,200원

- 협력체계 구축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안전관련 유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단가를 준용하고, 연1회 유간기관 업무협의를 전제하여 비용추계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3,929,415천원(연평균 2,785,88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조례안제5조)	326,250	326,250	326,250	326,250	324,750	1,629,750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 (조례안제7조)	2,459,333	2,459,333	2,459,333	2,459,333	2,459,333	12,296,665
	협력체계 구축 비용(조례안제8조)	600	600	600	600	600	3,000
	소계(b)	2,786,183	2,786,183	2,786,183	2,786,183	2,784,683	13,929,415
	□ 총 비용(b-a)	2,786,183	2,786,183	2,786,183	2,786,183	2,784,683	13,929,41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기구 유해성 조사 실태조사 비용(제5조)
- 유해물질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한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제7조)
- 협력체계 구축비용(제8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3,929,415천원(연평균 2,785,883천원)

$$\begin{aligned}
 \text{○ 총비용} &= \text{실태조사 비용} + \text{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 + \text{협력체계 구축비용} \\
 &= 1,629,750\text{천원} + 12,296,665\text{천원} + 3,000\text{천원} \\
 &= 13,929,415\text{천원}
 \end{aligned}$$

나. 세부 산출 내역

$$\text{○ 실태조사 비용} = \sum_{i=1}^5 (\text{연간실태조사비용})_i = 1,629,75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한개 기관 당 토양오염 검사비용 = 750천원
 - 'FITI시험연구원'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22개 유해성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 비용(1개 기관 기준)을 준용함
- 실태조사 대상 학교는 총 2,173개교

<서울시 학교 현황>

구분	학교수(개교)
유치원	830
초등학교	607
중학교	386
고등학교	320
특수학교	30
합 계	2,173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2019년 상반기 기준)

- (1차년도) : 750,000원 × 435개교 = 326,250,000원
- (2차년도) : 750,000원 × 435개교 = 326,250,000원
- (3차년도) : 750,000원 × 435개교 = 326,250,000원
- (4차년도) : 750,000원 × 435개교 = 326,250,000원
- (5차년도) : 750,000원 × 433개교 = 324,750,000원

○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 = $\sum_{i=1}^5$ (연간친환경모델우선적용비용)_i = 12,296,665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비용 = 2,459,333천원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최근 3년간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예산편성액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추계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구분	학교수(개교)	사업예산(천원)
2017년	10개교	2,119,250
2018년	11개교	2,473,655
2019년	13개교	2,785,095
평균	11개교	2,459,333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 협력체계 구축비용 = $\sum_{i=1}^5$ (연간협력체계구축비용)_i = 3,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협력체계 구축비용 = 연간 운영비 + 연간 업무추진비

= 100천원 + 500천원

= 600천원

- 2019년 '안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사업예산의 실 사례를 준용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연간 운영비(협력체결및회의경비) = 100,000원 × 1회

= 100천원

· 연간 업무추진비(유관기관업무협의회) = 20,000원 × 5명 × 5기관 × 1회

= 500천원

[붙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

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반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